

의안번호	제512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4년 3월 5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2
----------	-----

제출연월일 : 2024년 3월 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신청받아 실시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 등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 면제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험·조사 및 분석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절차, 기간 등(안 제3조)
- 종목별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 납부방법·절차 및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기준(안 제4조 및 별표 3)
-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 등(안 제6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제외사유서 붙임)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조사”라 함은 증식·양식 지역, 어구자재, 어로, 수질 오염 및 그 밖의 수산자재의 시험·조사를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수질·수산물·수산용수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분석을 말한다.

제3조(시험·조사 및 분석 등 신청) ①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시험·조사 및 분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시험·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검체 소요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조사 및 분석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 실시기준 및 방법 등 해당 연구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설계서 및 검체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는 연구용역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사전에 연구소에서 별도로 검체를 확보하여 사용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조사 및 분석이나 연구용역(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조사 및 분석의 처리기간 및 검체의 소요량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수료 납부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조사 및 분석을 신청하거나 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연구용역을 신청하는 자는 연구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견적가격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소장은 신청된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연구소장이 시험 등의 실시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의 차액. 다만, 신청사항의 변경으로 수수료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액

제5조(성적서 교부 등) ① 연구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시험·조사 및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표 2에 따른 성적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시험·조사 및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성적서는 기재사항의 명백한 오기(誤記) 또는 누락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성적서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내 관할 공공용 수면(「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산용수 분석을 신청

한 경우

2. 연구소와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대학, 기업 또는 민간 양식장 등의 대표자·관리자가 그 협약에서 정한 공동연구기간 내에 해당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수산용수 분석을 신청한 경우
3. 도내 양식장, 낚시터 등에서 어류의 대량폐사 등이 발생하여 해당 시설의 대표자·관리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수산용수에 대한 분석이 신청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이나 행정시책을 위해 필요하여 수산용수에 대한 분석을 신청한 경우

제7조(시험 등의 거부) 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받은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없다.

1. 시험 등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구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신청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소장이 시험 등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② 연구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 등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출된 검체의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검체 등의 처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체 및 설계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 등을 실시한 후에도 사용가치가 남

아 있는 검체의 경우에는 시험 등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이 반환
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조사 및 분석의 처리기간 및 검체 소요량(제3조제4항 관련)

종 별	처 리 기 간	검체 소요량
수산물 잔류농약 검사	12일	수산물 1킬로그램 이상 (가식부 기준)
수산물 항생물질 검사	12일	수산물 1킬로그램 이상 (가식부 기준)
수산물 중금속 검사	12일	수산물 1킬로그램 이상 (가식부 기준)
수산용수 분석	10일	수산용수 4리터
바이러스성 질병검사	13일	10마리 (살아있는 상태)
세균성 질병검사	13일	10마리 (살아있는 상태)
기생충성 질병검사	13일	10마리 (살아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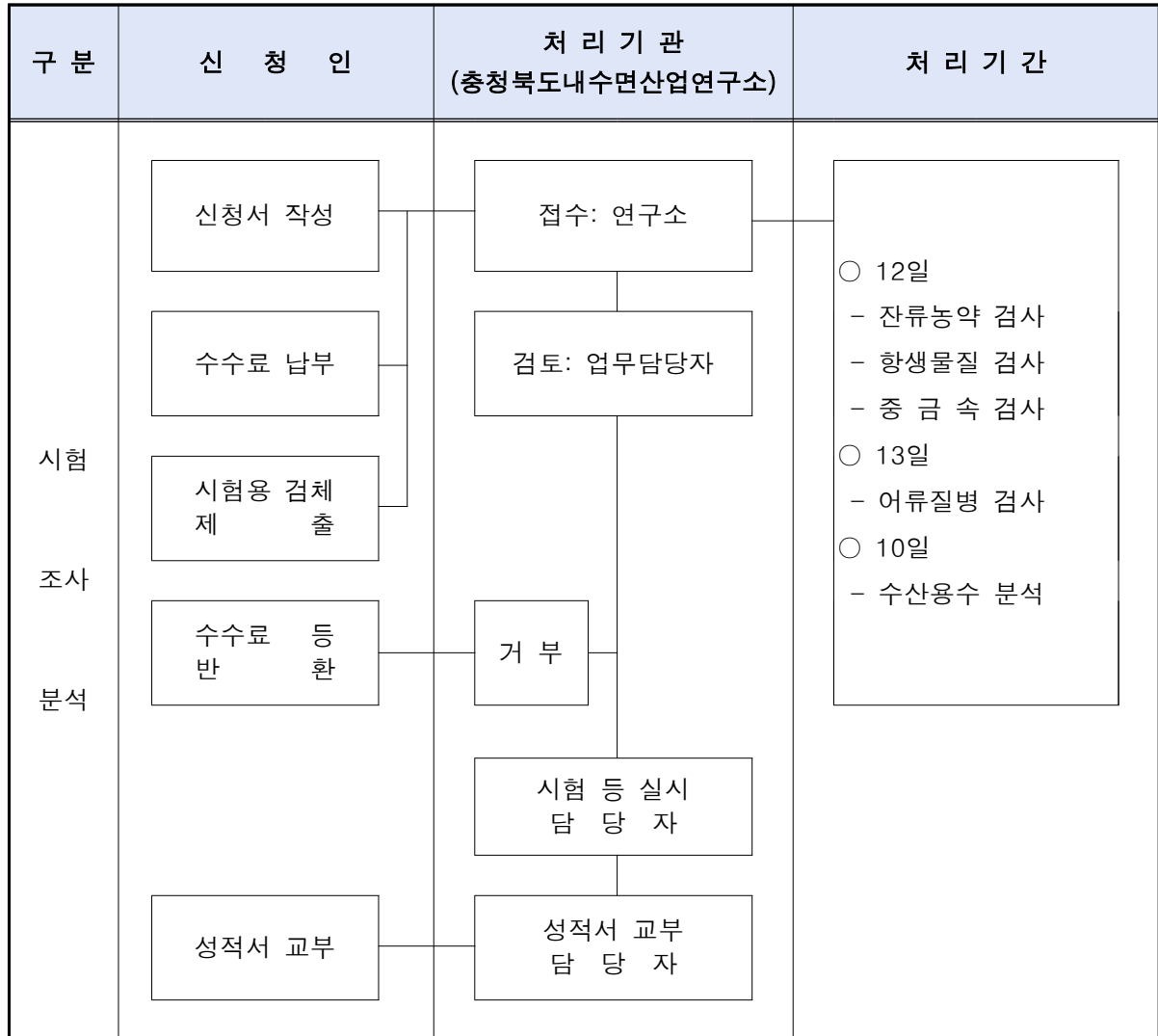
[별표 3]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제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종 목	단 위	수수료
수온	각 1성분	300
용존산소	"	2,800
pH	"	800
생물학적산소요구량	"	5,800
화학적산소요구량	"	7,300
암모니아성질소	"	10,800
아질산성질소	"	2,800
질산성질소	"	5,400
총질소	"	3,700
총인	"	3,400
부유물질	"	2,800
클로로필 a	"	1,300
대장균군	"	13,000
위 표에 규정되지 않은 시험·조사 및 분석	1건	유사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성적서 사본의 교부	각 1통	500

업무처리 흐름도



시험·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신청서 (제3조제2항 관련)

신청인	① 성 명 (상 호)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	
⑤ 신청 목적				
⑥ 연구용역 수행기간			부터 까지 (일간)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 (서명또는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100px;">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장 귀하</p>				
첨부물 1. 실시기준 및 방법 등 연구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설계서 2. 시험·조사 및 분석용 검체(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험 등 신청 접수증(제3조제3항 관련)

접수번호 _____	
건 명	
민 원 인	
접 수 일	년 월 일
수 수 료	원정
처 리 기 한	년 월 일까지 사정에 따라 처리기한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장	

[별지 제4호서식]

시험·조사 및 분석 성적서(제5조제1항 관련)

성적서 교부 번호:

시험·조사 및 분석 종목명:

신청인 주 소:

성 명:

상 호: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험·조사 및 분석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검체내용

시험·조사 및 분석의 종목 (검 체 명)	신청목적	접 수 일 접수번호
채 취 장 소		

2. 시험·조사 및 분석 결과

년 월 일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 성적은 제시된 검사물에 한하고 신청 목적 이외의 광고·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와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조사 및 분석 성적서 사본 발급 신청서 (제5조제3항 관련)

주 소		상 호 명	
성 명		원본발급 번 호	
시험 등의 종목			
매 수			
<p>「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험·조사 및 분석 성적서의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 소</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서명또는인)</p> <p>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장 귀하</p>			

관련법령 발췌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행정관청(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평가(이하 “사전·사후영향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 사전·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사전·사후영향조사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한다.
6.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산식물전염병”이란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식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에서 제3조의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

제1조(수수료)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구 분	종 목	세 부 종 목	단 위	수수료(원)	비 고
1. 수산용수 분석	일반지표성분	수온	각 1성분	300	
		pH	"	800	
		염분, 투명도	"	800	
		용존산소, 부유물질	"	2,800	
		아질산성질소	"	2,800	
		화학적산소요구량	"	7,300	
		질산성질소	"	5,400	
		암모니아성질소	"	10,800	
		총질소	"	3,700	
		인산염, 규산염	"	5,600	
	중금속 함량	카드뮴, 구리, 아연, 납, 철	"	22,300	
	수온	"	13,300		
기타특수 화학물질	PCBs	"	125,200		
	PAHs	"	125,200		
2. 해저퇴적물 분석	일반물리 화학성분	강열감량	"	1,000	
		화학적산소요구량	"	7,300	
		산 휘발성 황화물(AVS)	"	5,400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	18,300	
	중금속 함량	카드뮴, 구리, 아연, 납	"	13,300	
		수온	각 1성분	22,900	
3. 수산물의 이화학적 분석	일반물리 화학성분(영양성분)	식염	각1성분	6,000	
		조단백질	"	6,000	
		수분	"	8,000	
		조회분	"	8,000	
		식이섭유, 총질소	"	26,000	
		조지방	"	26,000	
		조섭유	"	26,000	
		칼슘	"	46,000	
		인	"	46,000	
		비타민A	"	74,900	
		열량 및 탄수화물	시료 1개당	5,000	
	일반물리 화학성분(품질평가)	K값	각1성분	3,500	
		산가	"	6,000	
		pH	"	8,600	
		휘발성염기질소	"	8,600	
		요오드가, 과산화물가	"	8,600	
		트리메틸아민	"	8,600	
		히스타민	"	8,600	
		당도	"	8,600	
		아미노산성질소	"	26,000	
어패류독소	마비성 패류독소	각 1성분	53,100		
	설사성 패류독소	"	53,100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	40,000		
	복어독소	"	53,100		
동물용 의약품 잔류시험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정량시험				
	- 테트라사이클린계(4종):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독사이클린 - 페니실린계(2종):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	계열별 40,000 항목추가당 4,500		

구 분	종 목	세 부 종 목	단 위	수수료(원)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놀론계(2종): 옥소리산, 플루메틴 - 플로르퀴놀론계(5종): 시프로플록사신, 엔노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프로사신, 노플록사신 - 항생제 계열별 동시분석인 경우에는 각각 1항목(1성분)의 시험 수수료에 1성분 추가 시마다 4,500원을 추가함. 			
	중금속 함량	수은	"	33,000	
		카드뮴, 납	"	76,700	
4. 수산물 및 용수의 세균분석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단순처리 수산물에 한함	세균	일반세균수	"	13,000	
		대장균	"	13,000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	13,000	
		살모넬라(Salmonella spp.)	"	15,000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이질균(Shigella spp.)	"	15,000	
5. 어구자재의 성능 측정	자 재	어망(사)강도와 신장률, 탄성회복도, 유연도, 망사 직경, 어구자재의 부력, 어구자재의 침강력	"	40,000	
	어 구	어로계기 성능, 기타 어구성능	"	40,000	
	생분해 수산자재	망사성능 분석 및 인증 (망사의 강도와 신장률, 매듭강도와 신장률, 망사직경, 유연도 등)	각1점	150,000	
		어망성능 분석 및 인증 (망목내경, 매듭강도, 신장률, 매듭상태, 중량 등)	"	150,000	
6. 양식장 적지조사	간 석 지	1만㎡미만(2지점)	"	2,000	
		1만㎡이상 5만㎡미만(3지점)	"	3,000	
		5만㎡이상 10만㎡미만(4지점)	"	4,000	
		10만㎡이상 20만㎡미만(5지점)	"	5,000	
		20만㎡이상(10지점)	"	10,000	
	내 수 면	1만㎡미만(2지점)	"	2,800	
		1만㎡이상 5만㎡미만(3지점)	"	4,200	
		5만㎡이상 10만㎡미만(5지점)	"	7,000	
		10만㎡이상 20만㎡미만(7지점)	"	9,800	
육상축양장	육상축양장 1개소(3점)	건 당	4,500		
7. 수질오염조사		※조사종목은 피해상황에 따라 각 조사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조사 1지점	2,000	
8. 기타 시험 · 조사 및 분석		앞의 각 항에 규정되지 않은 시험 · 조사 및 분석	1건	유사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9. 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하였을 때에 제1, 2, 3, 4, 5, 6, 7, 8, 9항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어촌계에서 지선어민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장 적지조사를 의뢰하였을 때에 상기 각항 중 제7항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10. 결과서 부분의 교부			각 1통	500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수수료) ①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

시험수수료 금액표(제7조 관련)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수질 검사 [폐수·하수·오수·하천수·호소수(湖沼水)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1. 온도	300
	2. 수소이온농도	800
	3. 용존산소	2,800
	4.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800
	5. 화학적 산소요구량	7,300
	6. 투과율법에 의한 색도(色度) 측정	2,900
	7. 부유물질	2,800
	8. 노말핵산 추출물질	6,000
	9. 노말핵산 추출물질 중 광유류	15,400
	10. 염소이온	2,900
	11. 암모니아성 질소	10,800
	12. 아질산성 질소	2,800
	13. 질산성 질소	5,400
	14. 총질소	3,700
	15. 용존 총질소	3,700
	16. 인산염인	5,600
	17. 총인	3,400
	18. 용존 총인	3,400
	19. 페놀류	7,800
	20. 시안	13,100
	21. 불소	7,400
	22. 크롬	6,900
	23. 아연	6,900
	24. 구리	6,900
	25. 카드뮴	6,900
	26. 납	6,900
	27. 망간	6,900
	28. 니켈	6,900
	29. 철	6,900
	30. 비소	13,900
	31. 원자흡광광도법에 의한 셀레늄 측정	6,000
	32. 6가 크롬	6,900
	33. 수은	10,600
	34. 알킬수은	17,400
	35. 유기인	20,300
	36. 폴리염화비페닐(PCBs)	125,200
	37. 음이온 계면활성제	13,200
	38. 휘발성 저급 탄화수소류	13,900
	39. 클로로필 a	1,300
	40. 전기전도도	3,000
	41. 총 대장균군	
	가. 하천수·호소수	14,800
	나. 폐하수	6,200
	42. 분원성(糞原性) 대장균군(하천수·호소수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11,400
43. 대장균(수영 등 물놀이 용수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12,600	
44. 생태 독성	455,000	

비용추계서 첨부제의 사유서

○ 첨부제의 관련 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12조3항

○ 사 유

- 본 개정안은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신청받아 실시하는 각종 시험·조사 및 분석 등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 면제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비용 이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

○ 작성자: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재정